

의안번호	2207336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5.25.
추계번호	25B019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의2(산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산림청장은 산지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 산지은행계정을 둠(제1항) 산림청장은 산지은행사업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의3(산지은행사업)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경영 규모의 적정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선, 산지(山地)시장과 임업인·독립가·임업후계자(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지은행사업을 수행함 1. 산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2. 산지의 임대·매도 등의 수탁사업 3. 산림경영복귀 지원사업 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사업 5.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 6. 산지은행운용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 지원 사업	의무규정
3	안 제6조의4(산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산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함(제1항) 1.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출연 3. 산지의 임대·매도 등의 수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	의무규정
4	안 제6조의6(산지매매사업 등)	산림청장은 독립가·임업후계자(이하 “전문임업인”이라 한다)를 육성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임업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1. 해당 산지를 매입하여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에게 해당 산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재량규정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임업인등이 해당 산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산림청장은 전문임업인에게 산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산지매매·알선사업의 추진절차, 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6조의7(산지의 임대차사업)	산림청장은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임업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음(제2항)	
		산림청장은 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4항)	
6	안 제6조의8(전업한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 지원)	제6조의6에 따라 산지를 매도하고 전업 또는 은퇴한 임업인등이 전업 또는 은퇴 후 3년 이내에 산림경영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지의 환매(還買)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받은 산림청장은 그 산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산지매매사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6조의9(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시행하거나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기술지원 및 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6조의10(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산림청장은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임업인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 및 산지에 딸린 임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임업인등에게 임대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지등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9	안 제6조의12(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산림청장은 임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산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10	안 제6조의13(산지매매사업 자금의 융자 등)	산림청장은 제6조의6부터 제6조의10까지 및 제6조의12에 따른 산지매매사업 등에 드는 자금을 제6조의2에 따른 산지은행계정에서 융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산림청장은 제6조의6에 따른 산지매매사업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산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음(제2항)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填)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11	안 제6조의14(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산지은행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산지은행의 재산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산지의 운용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국유림으로 편입을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산지를 국유림으로 편입·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산지를 무상으로 국유림에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음(제3항)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의2(산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 참조
2	안 제6조의3(산지은행사업)		
3	안 제6조의4(산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4	안 제6조의6(산지매매사업 등)		
5	안 제6조의7(산지의 임대차 사업)		
6	안 제6조의8(전업한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 지원)		
7	안 제6조의9(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8	안 제6조의10(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9	안 제6조의12(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10	안 제6조의13(산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11	안 제6조의14(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2. 상세 사유

□ 산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산지은행사업, 산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4)

- 개정안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산지은행계정을 두고 산림청장이 산지은행사업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산지은행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출연 등의 방법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산지은행사업으로 산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산지의 임대·매도 등의 수탁사업, 산림경영복귀 지원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사업,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 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을 규정함
- 다만,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산지은행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산지은행사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산지매매사업 등(안 제6조의6)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임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임업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해당 산지를 매입하여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는 임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매도 또는 매입 알선하거나 임업인등이 해당 산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산지 매입 및 자금 지원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산지 매매·알선사업의 절차 및 자금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현행법¹⁾에 따라 국가 등은 전문임업인(독립가임업후계자)이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해 산림을 취득할 경우, 그 임업인에게 산지 매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리의 용자²⁾로 지원하고 있음

[표 1] 최근 3년간 산지매매사업 용자지원 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면적	용자액	면적	용자액	면적	용자액
용자실적	1,699	50,156	2,125	58,613	2,207	52,734

자료: 산림청

□ 산지의 임대차사업(안 제6조의7)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임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등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하고, 임대차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산지 임대차 및 장려금 지급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임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지

1)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2) (용자금리) 연1~2%, (용자기간) 20년 거치 15년 상환

의 규모, 산지 임대차의 규모 및 요율(料率), 장려금 지급의 대상 및 금액 등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전업한 임업인의 산림경영 복귀 지원(안 제6조의8)

- 개정안은 산지를 매도하고 전업 또는 은퇴한 임업인등이 3년 이내에 산림경영에 복귀하려는 경우에 산지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산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매매사업자금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산림경영복귀 희망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개정안에서 산림경영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안 제6조의9)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시행하거나,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산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기술 지원 및 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안 제6조의10)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임업인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임업인등이 소유한 산지 및 산지에 딸린 임업용시설을 매입하여 그 임업인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산지 및 임업용시설 매입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 산지 등의 매입가격,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향후 발생할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임업인의 규모와 산지 매입 수요 등을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음

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들의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등(안 제6조의12)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임업인들이 소유한 산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사업을 통해 산주에게 산지 매매대금에 이자 등을 포함하여 10년간 분할하여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2025년 기준 예산 106억원), 개정안의 취지는 산지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으로서,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 수급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기준·방법 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산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안 제6조의13)

- 개정안은 안 제6조의6부터 제6조의10까지 및 제6조의12에 따른 산지매매사업 등에 드는 자금을 산림청장이 산지은행계정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융자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상기한 개정안의 각 조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들과 융자의 효율 및 기간 등 추계에 필요한 변수들을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안 제6조의14)

- 개정안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운영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를 국유림에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유림 관리 대상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국유림에 편입될 산지의 규모를 알 수 없고 관리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농지은행사업과 산지은행사업(안)의 비교

구 분		농지은행	산지은행(안)
산지임대 수탁사업	●수탁기간	■ 5년 이상	■ 5년 이상
	●수탁 수수료	■ 임차료의 5%	■ 건당 20만원
	●대상지	■ 1,000㎡ 이상	■ 0.5ha 이상
	●임차인 선정	■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사를 직접 짓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	■ 임업경영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 ■ 전문임업인, 1ha 이상 산지를 경영하고 있는 자 우선 선정
산지매도 수탁사업	●수탁기간	■ 6월 이내	■ 1년 이내
	●수탁수수료	■ 0.6~0.9%(5천만원) 가격대별 상이	■ 건당 20만원(1회)
	●대상지	■ 1,000㎡ 이상	■ 1ha 이상 산지 및 30ha 미만 산지 ■ 준보전산지
	●매도대상	■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산주, 임업인 등이 소유한 「산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림
산지 매매사업	●대상지	■ 1,983㎡ 이상 농지 ■ 감정가격이 25,000원/㎡ 미만 농지	■ 1ha 미만 산지 및 30ha 이상 산지 ■ 감정가격이 3,000원/㎡ 미만 산지
	●매도대상	■ 만65세 미만인자 ■ 이농·전업(전업),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만65세 미만인 자 ■ 전문임업인, 산지면적 1ha 이상 소유자, 산림경영복귀자 우선 선정
	●매도제외자	■ 영농규모화사업 원리금 연체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의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외의 자	■ 산지매입자금 원리금 연체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산지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산지까지의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임업인 이외의 자 다만, 구입하려는 산지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산지를 1ha이상 경영하고 있는 자에게는 매도 가능
	●지원조건	■ 금리 : 연 1% ■ 상환기간 : 15~30년(연령으로 차등적용)	■ 금리 : 연 1~2% ■ 상환기간 : 15~35년(연령으로 차등적용)

구 분		농지은행	산지은행(안)
		■ 상한 : 논 30천원(밭 35천원)/3.3m² → 초과금은 자부담	■ 상한 : 15천원/3.3m²(총액 3억원) → 초과금은 자부담
	●기타	■ 영농복귀지원사업 포함	■ 산림경영복귀지원사업 포함
산지 임대차 사업	●임대차 기간	■ 5년 이상	■ 5년 이상
	●대상지	■ 2,000m² 이상~100,000m² 미만	■ 0.5ha 이상~30ha 미만
	●임차인 선정	■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우량농지) 등에서 승인 받고 농업용 간이시설이나 농업용 비닐 온실 등 설치 가능) ■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혹은 경영 실급 임대농장 운영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문임업인 및 산지면적 1ha 이상 소유자 우선 선정 * 연령제한 없음 * 임차 제외자는 산지매매사업 매도 제외자와 동일함
교환· 분할사업	●지원내용	■ 교환 또는 분리·합병 농지의 가격 차액(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일 때 성립됨) ■ 연리 1% ■ 10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 교환 또는 분리·합병 산지의 가격 차액(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일 때 성립됨) ■ 연리 1% ■ 10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주요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정리	■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산지교환, 분할 및 합병
연금사업	●대상자	■ 영농경력 5년 이상 ■ 농지소유자 60세 이상	■ 산주 ■ 제한없음
	●대상지	■ 2년이상 보유 ■ 30,000m² 이하 농지(9억원 기준)(상한선 월 300만원 수령)	■ 2년이상 보유 ■ 산지의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산지(상한선 월 100만원 수령) – 지급기간 15년을 넘는 잔액은 계약시일시금으로 지급
	●연금수령액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 적용	■ 2인이상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적용(입목재해보험 가입시 입목가 포함)
	●연금수령방식	■ 매월수령 ■ 중신형 ■ 기간형(5,10,15년) –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	■ 매월수령 ■ 기간형(5,10,15년)
경영회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최근 3년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40백만원 이상인 농가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40백만원 이상인 일반 농업경영체

구 분		농지은행	산지은행(안)
		농업경영체 ■ 영농경력 2년 이상 등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 산림경영 경력 2년 이상 등
	●지원내용	■ 소유농지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임대 ■ 임대기간 7년	■ 소유산지 매입하여 해당 임업인에게 임대 ■ 임대기간 7년
	●제외대상	■ 최근 2년 내 세대원의 소유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년도 1월1일 현재 70세 이상인 자 (65세~69세 단서 조항)	■ 30ha 이상인 산지 (제외규모 30ha는 향후 연구를 통하여 조정)
매입비축 사업	●도입목적	■ 농지가격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하락시 농지매도물량의 급증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농가파산 및 농업금융기관의 부실에 대비	■ 미 도입

주: 본 자료는 산림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산지은행사업(안)을 농지은행사업과 비교한 것임
 자료: 산림청